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
#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EC 2024	접수일시				처리기간	60일 이내
 사업명							<del></del>
주관기관	국문			주소			
	영문		사업자등록번호				
수행 책임자	한글 성명			성명		생년월일	
	소속 기관			 명		직위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	전자우편주소		
총사업기간	ı	년 월	Ç	일 ~	년 월	월 일	( 년)
사업비 (백만원)	구 분	정부 출연금			민간 부담금		계
	1차 연도				-		
	2차 연도			-			
	3차 연도			_			
	4차 연도			_			
	계			-			
위탁 수행기관					위탁사업비 총계		
		_			(백만원)		
참여기관명							
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



#### [작성방법]

1) 수행책임자 : 상기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총괄책임자로 명시되어 사업수행을 총괄하는 자

2) 신청인 : 상기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 이름을 기입하고, 총장 직인 날인이 원칙이나

불가피한 경우 사인(私印)

※ 예시 : 신청인 ○○○ 대학교의 총장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## 별첨

# ○○○특성화 대학 신청요건 증빙목록표

연번	증빙제목	비고		
1	가. 현재의 인재양성 제반 요건 수준 * 특성화교과목편성, 교수진, 연구시설 및 장비,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	P00 ~ P00		
	나. 사업추진내용을 포함할 경우 인재양성 제반 요건 * 특성화교과목편성, 교수진, 연구시설 및 장비,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	P00 ~ P00		
2	특성화대학등 지원사업 전담조직 설치 여부 예시) 전담조직 설치·운영계획, 조직체계, 기능 등 포함			
3	사업총괄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자격 여부 에시) 총괄책임자 및 교수진의 담당과목 역할, 조교수/전임교원 등 지격표시	P00 ~ P00		
4	* 필요 시 증빙 추가	P00 ~ P00		
☞ (비고)	지원사업의 신청「사업계획서」에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기입			

신청인 및 소속기관은 상기와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〇〇〇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총괄책임자)

(인)

○○○ 대학교 총장

(직인)

#### 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

- ※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, 必
- ※ 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도 제출하고, 파일명은 "증빙연번-증빙제목".pdf 형식으로 명기함
- ※ 증빙서류는 신청미감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확인된 서류만 유효(단,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외)
- ※ 동반성장형 신청 시 주관대학, 참여대학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별 각 1부씩 제출